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자의 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시설기준으로 정하며,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입소정원 : 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22명으로 한다.

※ 모집방법

1. 인터넷(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포탈사이트 등)
2. 매스컴(지역신문이나 방송 등)
3. 홍보 전단지
4. 기타

【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수급자

2. (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입소절차 등)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 상세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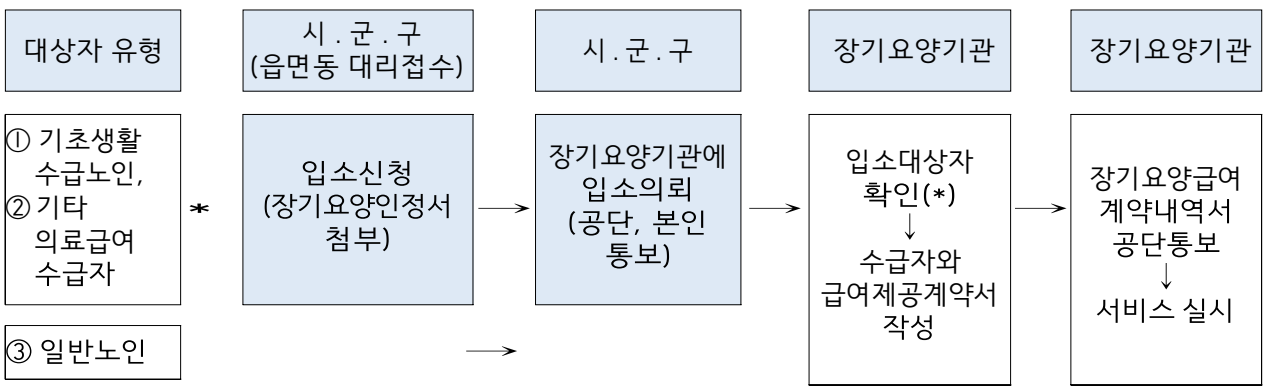

❍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의성군청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의성군청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 결정한 군청은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 시설 입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함.
- 입소자 주민등록증, 도장
- 보호자 주민등록증, 도장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 갈아입을 옷, 남자어르신 면도기
- 신체구속동의서(신체구속 사유 있는 대상자에 한함)
- 기초수급자일 경우 추가서류
  · 입소자 명의 통장 사본
  · 입소 전 전입신고

①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인증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도리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수급(또는 보호자)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도리원에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이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기타 비용 부담액 -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병실침실료등

구 분(1일수가)		2022년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예시			
		일 반 (20%)	경 감 (12%)	경 감 (10%)	경 감 (8%)
본인 부담금	1등급(74,850)	449,100	269,460	224,550	179,640
	2등급(69,450)	416,700	250,020	208,350	166,680
	3~5등급(64,040)	384,240	230,540	192,120	153,690
비 급 여	식재료비 (식사+간식포함)	150,000 1일 식사 1,500*3회*30일= 135,000 1일 간식비 50*1회*30일=15,000	150,000 1일 식사 1,500*3회*30일= 135,000 1일 간식비 50*1회*30일=15,000	150,000 1일 식사 1,500*3회*30일= 135,000 1일 간식비 50*1회*30일=15,000	150,000 1일 식사 1,500*3회*30일= 135,000 1일 간식비 50*1회*30일=15,000
합 계	1등급	599,100	419,460	374,550	329,640
	2등급	566,700	400,020	358,350	316,680
	3~5등급	534,240	380,540	342,120	303,690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은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입소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시설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⑦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⑧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준다.

라. 힐링장수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위생케어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위생케어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동의 부담 없이 제공한다.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 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시설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입소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입소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⑩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⑪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⑫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 처우)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원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받는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소계약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5. (퇴소 등)

1. 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3. 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6.(퇴소 후 관리)

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